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103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마포구민에게 전문성과 행정의 지속성을 갖춘 양질의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포구 근로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의 위탁기간을 현실화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근로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의 위탁기간 변경(안 제7조제3항)

나. 근로복지시설의 관리·감독의 결과보고 시기 변경(안 제9조제1항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 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8. 12. ~ 9. 1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10.19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본문 중 “1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반기별”을 “분기별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 일로부터 <u>1년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9조(관리·감독) ① 수탁운영자 는 근로복지시설의 <u>반기별</u> 운영결 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 <u>3년</u> ----- .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관리·감독) ① ----- ----- <u>분기별</u> ----- ----- 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서울시 지정조치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## 4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일자리지원과 남혜원 (☎ 3153-8692)